

[사 건 명] 행심 2014-1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7.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법정대리인 ●●●)은 ♣♣♣학교 학생으로 피청구인 ♣♣♣학교장이 청구인과 청구의 ■■■ 등이 담배를 소지하여 이를 조사하던 중 청구의 동급생 □□□이 집에 있는 담배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2회에 걸쳐 함께 흡연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나. 피청구인이 담배사건을 조사하던 중 2014. 7. 2. 청구의 □□□은 청구인이 담배조달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로 모욕을 주었으며, 청구의 □□□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받아 사용하면서 값지 않은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2014. 7. 10.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4. 7. 16.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4. 7. 1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10.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담배소지 사건 이전에 발생한 청구의 안희관이 청구의 □□□을 폭행한 사건의 학교측 처분에 불만을 가진 □□□ 부의 감정적 대응에 비롯된 것으로 □□□의 모는 청구인의 처분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측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순서이나, 동 사건은 아이들이 수차례 학교에 남아 조사를 받는 동안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2014. 7. 7. 전화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사실과 학교에 출석하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다.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돈을 빌리고 일정기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나 협박 등의 가해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안 갚을 의도도 없었으므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교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학폭위를 열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고지하여 담임종결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또한 학폭위의 구성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모르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그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나 동 학폭위 관련한 모 위원은 □□□의 모와 잘 아는 사이로 학폭위 전후에 학폭위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 마. 약 2개월간 청구인과 청구외 □□□은 하교후에도 늘 같이 지내는 등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기에 교복바지를 줄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약 2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큰 금액이 아니므로 갚으라는 소리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실이 있으며, 야구 클럽 역시 □□□이 청구인과 같이 야구하고자 클럽을 사준다고 하여, 자신의 모와 통화하며 허락받은 후 자발적으로 사준 것이지, 청구인은 이미 2개 정도의 클럽이 있어 돈을 빌리면서까지 클럽을 사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 바. 학교측에서는 서면사과 처분이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고 일단 생활 기록부에는 기재되긴 하지만 나중에 삭제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학폭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처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하여 일단 서면사과를 받아들였으나, 차후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잘못인줄도 모르고 한 행동으로 마치 전과 자처럼 낙인찍혀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면,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하여 너무 그 처벌이 과중하므로, 부당한 것이다.
- 사.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진술과 관련한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인정한 것은 강취가 아니라 단순히 빌려서 그 시점까지 갚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모가 내교 당시 담당교사는 청구인의 학폭 사안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서로 상이한 것과, 카톡으로 욕설을 했다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고지 받았을 뿐인데, 담배사건이 학폭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답변서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 아. 청구인이 □□□의 집에 놀러가 있으면서 교복바지를 줄이겠다고 한 날이 2014. 6.22.이고, 담배사건이 발생한 날이 4일 후인 6.26.으로 막연하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3주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불과 4일 전의 일이었던바, 4일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어떻게 폭력

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글러브 또한 □□□이 모에게 허락을 받고 사주었고 모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폭력이라고 간주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자. 청구인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카톡으로 욕을 한 사실이나, 돈을 빌렸다는 것은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진술하고 나서야 자신의 생각이 달랐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강요에 의한 금품갈취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 사~자의 주장 보충서면으로 제출)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4. 6.26. 청구인을 비롯한 5명의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소지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은 담배에 관해 청구외 □□□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은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금품에 관련해서 진술을 했고, 청구인도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2014. 7. 2. 청구외 □□□의 부는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학생들의 사안을 모두 확인 한 후 2014. 7. 7.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학교로 오신 어머니에게 알려 드렸으며 청구인 모는 청구외 □□□ 학생의 진술서를 보기 원했지만 학폭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에 의해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고 개최 시기에 대해 3~4일 후 실시되며 소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린 바 있다.

다. 담배 사안으로 인해 담임선생님과 1학년 학년부에서 학생들을 방과 후에 조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 아버지가 2014. 7. 2. 담임선생님께 신고했고, 학교측에서는 신고 접수 후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에 학교폭력관련 진술서를 받았으며 하교시간에 다시 확인 해 주었고 더 이상의 내용 추가가 없음을 확인 후 바로 귀가 조치시켰기에 수차례 학생들을 남겨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담배 사안 조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화해 유도는 피해자측에서 원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리에서도 □□□의 아버지는 어떠한 중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측의 탄원서는 어머니가 작성한바 고려할 수 없는 자료이다.

라. 청구인은 학교폭력자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담배를 받기위해 몇 차례 요구를 하고 □□□의 집 앞까지 가서 창문을 통해 담배를 받았고(강요) 그 후에도 전화로 담배를 요구하고 거절하자 욕설문자를 하는 등의 모욕을 주었으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의 금품 관련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측의 의견인 것이다.

마. 또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의견은 항상 반대적인 것이고, 청구인은 돈을 빌려간 사실을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으나 □□□의 진술을 알고 난 이후 빌려갔고 갚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의 집안 형편이 부유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잘 사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다 갚으면 된다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바. 전담기구에서 학부모님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징계 사안에 따라 삭제 방법이 다르고 최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수위의 처분을 받

을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한 바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2014. 6. 26. 청구인을 비롯한 5명의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소지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은 담배에 관해 청구의 □□□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은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금품에 관련하여 진술을 했으며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은 담배소지 사건 이전에 발생한 청구의 안희관이 청구의 □□□을 폭행한 사건의 학교측 처분에 불만을 가진 □□□ 부의 감정적 대응에 비롯된 것으로 □□□의 모는 청구인의 처분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탄원서 등은 정상관계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될 뿐 학폭법상의 행위여부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측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순서이나, 동 사건은 아이들이 수차례 학교에 남아 조사를 받는 동안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2014. 7. 7. 전화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사실과 학교에 출석하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4. 7. 2. □□□의 부가 신고하고 7. 7. 통보후 7. 10. 학폭위가 열린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돈을 빌리고 일정기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나 협박 등의 가해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안 갚을 의도도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교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학폭위를 열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고지하여 담임종결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안희관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욕설을 보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당

히 많은 금원을 빌리면서 갚지 않고 카톡으로 욕을 한 점도 인정되므로 가해가 없고 학교폭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학폭위의 구성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모르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그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나 동 학폭위 관련한 모 위원은 □□□의 모와 잘 아는 사이로 학폭위 전후에 학폭위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폭위가 열리기 전 비밀누설금지의 약정을 하였고 학폭위 전후에 학폭위 관련통화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약 2개월간 청구인과 청구외 □□□은 하교후에도 늘 같이 지내는 등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기에 교복바지를 줄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약 2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큰 금액은 아니었기에 갚으라는 소리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실이 있으며, 야구 클럽 역시 □□□이 청구인과 같이 야구하고자 클럽을 사준다고 하여, 자신의 모와 통화하며 허락받은 후 자발적으로 사준 것이지, 청구인은 이미 2개 정도의 클럽이 있어 돈을 빌리면서까지 클럽을 사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위에 관련된 주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 및 그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서 카톡으로 욕을 한 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학교측에서는 서면사과 처분이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고 일단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긴 하지만 나중에 삭제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기에, 학폭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처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하여 일단 서면사과를 받아들였으나, 차후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인줄도 모르고 한 행동으로 마치 전과자처럼 낙 인찍혀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면, 아이가 한 행동에 비 하여 너무 그 처벌이 과중하므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행하는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이상 이보다 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사)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진술과 관련한 조사에서 부인 하다가 인정한 것은 강취가 아니라 단순히 빌려서 그 시점까지 갚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모가 내교 당시 담당 교사는 청구인의 학폭 사안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서로 상이한 것과, 카톡으로 욕설을 했다는 두가지 사 안에 대해서만 고지 받았을 뿐인데, 담배사건이 학폭과 관련되 었다는 것은 답변서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이 안희관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고 6월초분부 터 순차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카톡으로 욕을 한 사실 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아) 청구인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카톡으로 욕을 한 사실 이나, 돈을 빌렸다는 것은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이 진술하고 나서야 자신의 생각이 달랐음을 인 정한 것이며, 이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강요에 의한 금품갈취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배와 돈을 빌린 사실과 욕과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자)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

분은 학폭법상의 가장 경한 처분인 서면사과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